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한부모가족지원확대를위한
관광진흥법시행령등6개법령의
일부개정에관한대통령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한덕수 (교육부 등 7개 기관 소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개별 법령에서 교육지원·수수료 면제 등의 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의 범위를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에서 조손가족, 외국인 한부모가족 등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까지 확대하여 규정하도록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등 6개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필요 시 비용추계서 등 관련 서류 첨부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7. 21. ~ 8. 30.)

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6개
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

제1조(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의 개정)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의3제3호 중 “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”를 “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”로 한다.

제2조(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의 개정)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제2호 중 “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”를 “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”로 한다.

제3조(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의 개정)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
제4조(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의 개정)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2항 중 “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”를 “제5조 및 제5조의2에

다른 지원대상자”로 한다.

제5조(「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」의 개정)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2항제10호 중 “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”를 “「한부모가
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”로 한다.

제6조(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의 개정)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
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4제2항제4호 중 “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”를 “「한부모가
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택임대차분쟁 조정 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) 「주택임대차
보호법 시행령」 제33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
주택임대차분쟁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
적용한다.

제3조(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)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
제7조의4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평생교
육이용권 발급신청부터 적용한다.

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1조의3(관광취약계층의 범위) 법 제47조의5제1항에서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,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1. · 2. (생략) 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. (생략)	제41조의3(관광취약계층의 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----- 4. (현행과 같음)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

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의2(교육 지원의 대상) 법 제23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”이란 본인 또는 그 자 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을 말한다.	제10조의2(교육 지원의 대상) 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	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-----
3. · 4. (생략)	3. · 4. (현행과 같음)

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3조의2(문화소외계층의 범위) 법 제15조의4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1. · 2. (생략) 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4. (생략)	제23조의2(문화소외계층의 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 자 4. (현행과 같음)

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6조(급식지원) ① (생략)	제36조(급식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을 해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----- ----- ----- -----.
③ ~ ⑥ (생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3조(수수료) ① (생략)	제33조(수수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
1. ~ 9. (생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10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	10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----
11. (생략)	11. (현행과 같음)
③ · ④ (생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의4(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) ① (생 략)	제7조의4(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	4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-----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	
연 락 처	(044) 203 - 2258
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	
연 락 처	(044) 201 - 1579
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461
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433
법무부 법무심의관실	
연 락 처	(02) 2110 - 3733
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314
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396